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계의 대응 방안 (1)

홍 광 표
동아건설산업(주) 이사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sh)에서 세계 111개국의 통상장관들이 모여 지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출범하여 7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UR협상을 종결하고 WTO협정을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농민과 학계 등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4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WTO협정비준 동의안 및 WTO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어 WTO협정수락서를 1994년 12월 GATT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ATT의 회원국이면서 WTO협정이 발효되기 전 비준서를 GATT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WTO 原加入國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조만간 러시아와 중국이 WTO에 추가로 가입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들 국가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多者主義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교역질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地域經濟 블록 형성 움직임 또한 활발하여 지역 협력체의 域外差別 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협력체의 域外差別조치는 WTO의 자유 공정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WTO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형성과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감안해 볼 때, 우리의 WTO가입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OECD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향후 10년내에 2천억 내지 3천억불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한국경제는 2002년까지 2.3% 정도의 추가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WTO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무역 및 산업제도를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WTO 체제하에서 추진될 서비스부문 후속협상과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 등 새로이 제기 될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제도의 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생산요소가격의 안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동안 내수 및 관남 위주의 시장구조와 기술도입에 의한 조립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전기 산업은 선진국 기술의존도가 심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인데 GATT 정부조달협정이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어 그동안 보호되어 온 국내 관수시장마저 개방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즉 국가안전기획부,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6개시와 9개도, 그리고 23개 정부투자기관은 일 정액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건설공사에 대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조달시장의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전기산업의 경우 국내 중전기업체의 생산물량의 85% 이상이 조달청을 비롯한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의해 수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국내 중전기업체의 커다란 위기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 행하게도 중소기업 특별구매품목과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중전기제품 중 일부 및 한국통신에서 구매하는 통신부품이 이번 협정에서 조달협정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어 우리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의 중전기 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을 기술도입에 의한 모방생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첨단 핵심기술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전기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체제 도입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대 기업간,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화 채널을 형성하고 민간의 창의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의 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우리의 중전기 산업이 성공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WTO협정은 우리의 중전기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체제하의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우리의 중전기기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WTO체제의 多者主義에 입각한 개방경제하에서의 우리 중전기 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방향과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새로운 세계 교역질서를 주도할 WTO체제하에서의 우리의 중전기 산업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된 GATT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포함하여 8차례에 걸쳐 多者間 資易協商 끝에 탄생한 WTO체제의 출범과정을 간단히 조망한 뒤 과거 국제통상질서를 주도해 온 GATT체제와 앞으로 GATT를 대신하여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WTO체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가 우리의 중전기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출측면과 수입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계통상질서에 대비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2. 본 론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20여개국의 각료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UR 협정에 대한 최종 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WTO체제는 관세인하, 시장개방 등을 통하여 자유 공정무역을 촉진시키고 기업활동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개별국가의 의사결정력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대외무역정책을 WTO체제 내에서의 공경하고도 객관적인 무역정책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균등한 무역정책으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의 영향이 후진국, 중진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관심있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가. WTO체제의 출범

(1) WTO의 설립

최근의 국제통상질서는 1948년 GATT가 설립되면서 겪었던 것 못지 않게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GATT체제를 대신할 WTO체제의 출범이다. 1947년 10월에 제정되어 48년간 세계교역질서를 주도해왔던 GATT체제는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라는 데서 오는 한계, 만장일치제로 인한 의사결정상의 제한, 그리고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국가간의 분쟁해결능력의 한계 등으로 해서 최근 GATT체약국간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교역기구의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세계기구로서 WTO가 설립되었다.

WTO설립목적은 WTO 설립협정 전문에 명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WTO협정 당사국들은

첫째,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존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하고,

셋째,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폐지와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하고,

넷째,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 및 UR협상의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자생력있는 多者間 무역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多者間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 WTO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기본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1986년 우루과이 Punta del Este 선언 이후 WTO협정수락서의 제출까지 세계 각국의 움직임 및 우리 정부의 협상대응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86. 9. 20 :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105개 국가가 모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함.
- ▷'87. 1. 28 : 제네바에서 무역협상위원회(TNC)가 개최됨.
- ▷'90. 12. 7 : 협상종결을 위한 브뤼셀의 무역협상위원회가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각국의 의견대립으로 결렬됨.
- ▷'91. 12.20 : 둔켈 GATT사무총장이 최종협정안을 제시함.
- ▷'92. 11.20 : 미, EC 사이에 농업보조금감축에 관한 블레어하우스 협정을 체결하여 협상타결의 전기를 마련함.
- ▷'93. 6. 30 : 미의회의 신속처리권한의 시한을 1994년 4월 15일까지로 연장함.
- ▷'93. 7. 7 : 동경 G7회담에서 미, 일, EC, 캐나

다 등 4개국이 주요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함.

- ▷'93. 8. 30 : 무역협상위원회에서 12월 15일 타결 시한에 합의함.
- ▷'93. 12. 7 : 미국과 EC가 농업보조금과 시장접근 분야에 합의함.
- ▷'93. 12. 9 : 한국, 쌀부분시장개방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함.
- ▷'93. 12.15 : UR협상 타결선언
- ▷'93. 3. 25 : 국별최종이행계획서 검증완료
- ▷'94. 4. 12 : UR협상종결을 위한 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 개막
- ▷'94. 4. 15 : UR최종의정서 서명
- ▷'94. 12. 9 :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상정
- ▷'94. 12.16 : WTO협정 비준동의안 및 WTO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94. 12.30 : WTO협정수락서 WTO사무국에 기탁

(2) WTO협정의 범위

WTO협정문의 내용은 크게 협정본문 및 부속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정본문은 WTO의 기능, 조직, 예산, 가입, 의사결정 등 WTO기구 자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협정은 세계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규범으로 상품교역에 관한 13개의 다자간협정, 서비스협정(General Agreement Trade in Services), 지적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등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17개의 다자간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과 가입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되는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쇠고기협정 등 4개의 數者間協定(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WTO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1) 3~20개 국가간의 무역협정을 의미함.

(가) 관 세

“1994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제2항 및 “1994 GATT 제2조 1항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관세 인하 방법 및 관세양허계획표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회원국은 협상에서 동의한 관세인하는 양허 계획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에 걸쳐 균등 인하하며, 관세양허품목에 대해서는 1994년 4월 15일 현재의 기타 조세 및 과징금을 기재하도록 하며 새로운 比關稅障壁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UR협상과정에서 각국은 관세율을 협상 개시 시점인 1986년 9월을 기준으로 평균 1/3 이상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無稅化 또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상결과 선진국의 관세는 약 40% 정도 인하하기로 되었고 우리는 1994년 평균관세율 7.9%보다 높은 8.2%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나) 농산물협정

모든 比關稅障壁을 철폐하고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예외없는 관세화)하고 관세를 6년간 36% 감축하며 국내소비량의 3%(최초년도)~5%(최종년도)를 기준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여야 한다.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등 허용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을 6년간 20% 감축하며 수출보조금은 6년간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감축하여야 한다. 개도국은 10년간에 걸쳐 선진국의 2/3만큼을 감축하면 된다. 우리의 경우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으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 섬유협정

多者間纖維協定(MFA)하에서 대부분의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교역이 규제되어 오던 관행이 UR협상을 계기로 GATT 1994에 일치하도록 보호교역적 조치의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동안 공산품이면서도 GATT 체제에서 벗어나 多者間纖維協定(MFA)에 근거한 국별 兩者間 纖維協定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섬유류 수출을 본협정 발효 10년후인 2001년 1월 1일까지 완전 자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반덤핑협정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반덤핑규정을 개선, 명료화하였다. 즉, 원가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도 합리적 기간내에 모든 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며 상당기간 조사대상 물량의 20%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된다. 국내판매가격이 없어 구성가격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판매관리원 및 수출자의 실제자료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였다. 국내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비교시 加重平均 대 加重平均 혹은 개별거래 대 개별거래의 동일기준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덤핑제소가격을 덤핑제소 찬성자의 총생산액이 덤핑제소반대자의 총생산액보다 많고 국내총생산액의 25%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덤핑조사를 종결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5년 이후 자동소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再審을 통하여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입증토록 하여 장기간 부과를 제한하였다.

(마)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보조금을 貿易歪曲의 정도에 따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하였고 규제를 강화하였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 및 국산품이용촉진보조금으로 협정발효 3년(개발도상국은 수출보조금 8년, 국산품이용보조금 5년) 이내에 허용보조금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금지보조금이 供與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해결기구(DSB)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피해국은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 보조금은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 입증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구체절차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특정기업 혹은 특정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i)타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ii)GATT 1994의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iii)타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 보조금에 해당된다. 특히 보조금액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거나 특정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지원 등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허용보조금은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되더라도 특정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보조금 중 산업연구인 경우 총연구비용의 75% 상품화 이전단계의 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총개발비용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정지역의 1인당 소득이 전국평균의 85% 이하이거나 실업률이 전국평균 110% 이상인 지역의 지역개발보조금과 새로운 환경법규에 따른 요구조건을 기존설비에 적용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서,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며 적응필요금액의 20% 이내에서 지원되는 환경보조금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은 시행전에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른 회원국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상호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위원회는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위원회 권고가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요청회원국의 상응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상계관세부과절차는 반덤핑협정상의 조사 및 부과절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는 바, 제소자 및 소멸조항은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고 최소허용보조금비율은 1% (개도국은 2%)로 정하였다.

(바) 세이프가드 협정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의 공정한 무역에 의한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GATT 19조에 근거한 수량제한 또는 양허한 관세의 수정 철회 등 수입국이 취하는 대응조치이나 GATT의 無差別原則의 준수 및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보상 등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수출자율규제 등 灰色地帶措置가 빈번히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의 활용성을 높이고 수출자율 규제 등 灰色地帶措置를 철폐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졌다. 즉 無差別原則을 준수화되 특정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할 경우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감시하에 수출국과의 협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쿼터를 감축할 수 있고 절대적 수입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 발동시 3년간 보상 보복이 면제된다.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 灰色地帶措置는 협정발효후 180일 이내에 제출한 철폐계획에 따라 4년 이내에 철폐된다. 정식조치 이전의 잠정조치는 200일 이내에서 관세인상만 허용되고, 연장기간을 포함 최장 8년 동안만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이프가드 협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비록 예외적인 선별 적용의 인정이 우리나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선별적용도 WTO내의 다자간 규범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灰色地帶措置가 철폐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선별적용조치가 기존의 灰色地帶措置의 성격으로 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 무역관련투자협정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規制나 誘引 效果를 갖는 투자조치를 금지하였다. 즉 외국인 투자와 관련 국산품 이용의무부과 금지 등 내국민 우대 및 국내생산에 필요한 제품수입의 제한 등 수량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은 생산활동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관련제도의 무역왜곡 제한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多者間 協定이다.

(아) 수입허가절차협정

수입허가관 수입국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수입국의 관련행정기관에서 관세목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신청서나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하는데 수입허가절차는 수입허가에 관한 행정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절차와 관행의 공정하고 공평한 적용 및 운용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입허가절차 협정은 수입허가제도 그 자체를 比關稅

障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허가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比關稅障壁化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 허가 절차의 공정한 적용 및 투명성의 제고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협정은 수입허가 관련 규정 및 모든 정보는 즉시 공포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갱신서의 양식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하며, 허가 신청기관은 하나의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의 기관으로 제한하였으며 수입허가 관련 규칙 및 절차는 효력 발효 21일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운용에 있어서는 사소한 자료상의 오류나 미세한 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거절되어서는 안되며 허가된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환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현재의 수입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협정적용 대상국이 확대되어 교역 대상국의 수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경제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수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PR)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방송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적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문예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인 저작권과 저작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실연가, 저작물이 수록된 음반, 이러한 저작물을 전파하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인정하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진다.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 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직접 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보호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협정은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그리고 권리소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지적소유권 보호에 있어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타회원국 국민에게도 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대우원칙은 한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모든 이익, 특혜, 특전 또는 면책 등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권리소멸의 원칙이란 지적재산권의 권리보유자가 권리가 滯貨된 특허나 상표 등의 이용권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협정은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 기술이 중요시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제무역과 연계하여 강화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중전기기업계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체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협정이다.

(차) 기술장벽협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民 優待와 無差別原則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제정할 경우 국제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지 아니하는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해 당사국이 熟知할 수 있도록 간행물로 공표하고 WTO사무국을 통하여 타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합치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정절차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국민우대 및 무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와 관련 타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질의처를 두어야 한다.

기술장벽협정은 본협정이 무역에 있어서 比關稅障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동경라운드의 기술장벽(TBT)협정에 비하여 내용이 보다 명료화되었으며, 이행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욱 실효성있는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 분쟁해결절차협정

기존 GATT협정상 산재되어 있는 복수의 분쟁해결절차규정을 단일의 규정으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독자적 상설기구(DSB)를 신설하였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적 종말시한을 설정하고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자동채택되도록 하였고, 패널보고서의 자동채택으로 상실될 수 있는 패소국의 항변기회를 상소제도 도입으로 허용하였으며, 분쟁발생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복이 가능하도록 교차보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패널보고서 채택 및 이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타) 서비스협정

회원국은 특정조치에 대한 최혜국 우대원칙의 적용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타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시장접근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별 讓許表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서비스 공급자수, 총거래액, 수량쿼터 등의 수량제한적인 조치의 유지나 신규도입이 불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타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GATT사무국이 분류한 총 11개 분야, 154개 서비스업종 중 교육, 보건사회, 문화체육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의 78개 업종을 讓許하였다.

(다음호에 계속)